

의안번호	2212928
의 퇴 인	권칠승의원
회 답 일	2025.11.11.
추계번호	25D503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1조제1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의무규정
2	안 제52조의2제 1항(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 급 대상) 신설	배상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국가가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액을 말함	재량규정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에서 정함	의무규정
3	안 제52조의3(손 실의 보상 등) 신 설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 또는 구조 및 수습으로 인해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1조제1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미대상 현행법은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6명이 증가하므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 수당 등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
2	안 제52조의2제 1항(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 급 대상)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52조의3(손 실의 보상 등) 신 설	

2. 상세 사유

□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안 제52조의2제1항 신설)

- 개정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 배상금의 경우,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국가가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액을 말함
 - － 이는 현행법 제3조(피해자의 권리)제7호에서 배상 및 보상받을 권리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 위로지원금의 경우, 현행법 제3조(피해자의 권리)제5호에서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개정안은 별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다만, 현행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정안에서 규정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중복 여부,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건수 및 평균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 참고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6명
 -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24년 9월 13일 출범하였고 2025년 11월 현재 39차 회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손실의 보상 등(안 제52조의3 신설)

- 개정안은 국가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 손실 보상의 경우, 현행법 제3조(피해자의 권리)제7호에서 배상 및 보상받을 권리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다만, 구조·수습활동 참여,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손실 보상 대상자 수, 평균 손실보상금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제39차회의(2025.11.4.)에서 이태원 지역 상인 피해 신청사건 조사개시를 의결
 -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에서 참사 당시와 이후에 받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신청한 20건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계획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